#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083

발의연월일: 2024. 12. 30.

발 의 자: 박상웅・김민전・김대식

최보윤 • 이상휘 • 박덕흠

박형수 · 김미애 · 김 건

조지연 • 박준태 • 주호영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제도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장치임.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이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 법적 요구 사항 준수 및 에너지 효율을 관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무자격자가 선임자 역할을 맡거나, 교대 근무시 교대 조에 선임자 없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지만, 교대근무자의 법적 선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조항없이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음

24시간 가동되는 보일러와 같은 중요한 검사대상기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일 선임자에게만 의존해선 안되고, 교대근무선임자에 대한 법적 명확성과 선임자의 상시근무, 직무범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이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전기안전관리법」 등과 같이 관리자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관리자 부재로 인한 기기의 안전관리 공백 등을 방지하고 제도개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직무를 수행하게 하지아니한 자 및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및 제78조 등).

#### 법률 제 호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선임기준은"을 "선임기준 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지정 하여야 한다.

제69조제3항제14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75조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7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9호의4"를 "제9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5 및 제9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5. 제40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 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검사대상 기기관리자

9의6. 제40조제4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	제40조(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
임) ① (생 략)	임)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2
기준과 <u>선임기준은</u> 산업통상자	<u>선임기준 등은</u>
원부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④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
	대상기기관리자가 여행・질병
	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
	원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지정 하여야 한
	<u>다.</u>
<u>④</u> (생 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제6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제6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3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시공업자단체 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에 위탁할 수 있다.	

1. ~ 13의2. (생 략)		
14. 제40조제3항 및 <u>제4항</u> 단서		
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신고		
의 접수 및 검사대상기기관리		
자의 선임기한 연기에 관한		
승인		
제75조(벌칙) 제40조제1항 또는	,	
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		
기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8조(과태료) ① ~ ③ (생	,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 및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1. ~ 9의4. (생 략)

<u> <신 설></u>

1. ~ 13의2. (현행과 같음)
14 <u>제5항</u>
제75조(벌칙)
제5항
·.
제78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b>4</b>
제9호의5
1. ~ 9의4. (현행과 같음)
9의5. 제40조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
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 관
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지

	<u>아니한 검사대상기기관리자</u>
<u>&lt;신 설&gt;</u>	9의6. 제40조제4항에 따른 검사
	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자
	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